

대구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1087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김승규

2. B
변 론 종 결 2023. 6. 7.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18,930,15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18,930,15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30,1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1차전1803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1. 15. “C은 원고에게 18,930,156원 및 그 중 18,930,008원에 대하여 2021. 11. 10.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22.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은 2021. 2. 16.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21. 7. 26.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1. 2. 16.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8,930,1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2)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소극재산 중 E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 564,073,156원은 2021. 2. 16. 매매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가 합계 85,179,156원(원고에 대한 채무 포함)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채무는 그 발생일이 매매계약일 이후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주장의 C의 채무가 2021. 2. 16. 매매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매매계약 당시 C의 구체적인 채무 발생일, 발생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C의 누나 E에 대한 6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는 C이 이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6억 원을 가족들이 해결해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E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C의 E에 대한 채무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C의 E에 대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C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 중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채무 발생일자가 2021. 2. 16. 이후로 기재된 채무와 E에 대한 6억 원의 채무를 제외하면 소극재산이 85,179,156원 정도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적극재산 가액만 446,000,000원에 이르는 점, ⑤ C이 2021. 2. 16. 매매계약일 이전에 주식회사 F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위 법인 명의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영주시 G 토지, H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C이 2021. 2. 16.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과 C 사이에 2021. 2. 16.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1. 7. 26. 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8,930,1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C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미 위 부동산에는 I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4,300,000원의 근저당권, J 명의의 채권최고액 16,900,000원의 근저당권, 피고 B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반면 위 매매계약 당시 신고된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56,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이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C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영주시 K 대434㎡

2. 경상북도 영주시 K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1층 207.4㎡

2층 207.4㎡

3층 207.4㎡

3. 경상북도 영주시 L 전5㎡ -이상-

별지2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영주시 M N동

아르.시조 슬래브위기와지붕연립주택

1층 566.28㎡

2층 592.02㎡

3층 592.02㎡

지하실 592.3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영주시 M 대34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O호 아르.시조 O호

1층 상점25.74㎡

2층 연립주택 25.74㎡

3층 연립주택 25.7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438분의 47.6 -이상-

